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규정 전부개정고시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화특구”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특화특구계획”이란 특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특화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3.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이하 “관할 지자체”라 한다)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를 지정받아 운영 중인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장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말한다.
5. “특화특구위원회”란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말한다.
6. “실무위원회”란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실무위원회를 말한다.
7. “전문기관”이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관이 특화특구운영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특화특구위원회의 운영 등) ①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의결을 하는 경우 특화특구위원회의 간사는 서면의결서를 작성하며, 서면의결서는 위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로 출석한 소속 공무원의 의결권은 회의 소집 시 미리 통지한 안건에 한정한다.

④ 특화특구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특화특구지정 신청) ① 법 제5조에 따른 특화특구지정 신청과 법 제16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또는 특화특구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화특구계획

2. 법 제13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3. 법 제1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64조제1항·제3항, 제65조제2항 및 영 제37조·제3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 신청 시 규제특례 등 특화특구계획과 관련된 사항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있으면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특화특구계획에 첨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특화특구지정 해제 신청은 제외한다)을 하기 전에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특화사업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협의를 제1항에 따른 신청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검토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① 장관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
3. 해당 특화특구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특례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② 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화특구계획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다.

제6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고려사항) 영 제14조제7호에 따른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원 확보 :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비 및 민간자본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
2. 전문인력 : 특화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의 적정성
3. 기반시설 :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확보계획의 타당성

제7조(지정기간의 적정성 검토) 법 제11조에 따라 특화특구를 지정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을 변경(지정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장관은 특화사업의 실효성, 사업 추진기간

및 성과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기간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특화특구계획의 변경 등) 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화특구 운영상황 조사 결과 및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특화특구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또는 특화특구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① 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 결과 특화특구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권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평가 결과가 ‘부진’ 등급이거나 ‘미흡’ 등급을 연속하여 2회 받은 특화특구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의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제10조(특화특구운영상황의 조사 등) ① 장관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특화특구가 법 제16조제2항 각 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이하 “특화특구운영상황”이라 한다)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결과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 중요사항은 특화특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상황 조사 결과를 해당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제11조(지역별 특화특구 관리)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관할 지역에 소재한 특화특구의 성과 제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특화특구별 1:1 전담관 지정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운영상황 현장점검(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

2. 특화특구 신규 지정 및 특화특구계획 변경에 대한 사업 타당성 사전 검토, 컨설팅 지원 및 현장점검

3.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량평가 실적에 대한 교차 검증 및 의견 제출

4. 지역별·기업별 특성에 따른 신규 규제특례 등 정책수요 발굴

② 장관은 특화특구와 관련된 현장 기반의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특화특구 전략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정책 권고) ① 관할 지자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에 대하여 해당 특화특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줄 것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의 명칭
2. 소관 특화특구에 우선 지원을 요청하려는 재정지원정책의 내용
3. 재정지원정책과 특화사업의 연계성 또는 필요성
4. 재정지원정책을 지원받을 경우 기대되는 파급효과
5. 그 밖에 소관 특화특구에 재정지원정책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

③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를 특화특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특화특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특화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특화특구운영성과의 평가) ① 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평가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적·물적 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운영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평가가 종료되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화특구위원회에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평가결과가 우수한 특화특구 및 법 제26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는 관할 지자체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3항제3호 또는 대통령령 제36479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해제 기준에 해당하여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또는 특화특구계획 변경 여부의 검토가 필요한 특화특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화특구운영의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받은 평가와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평가를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실시한다.

1. 1차 평가 : 특례 활용 실적, 재정집행 및 자원조달, 일자리·기업·매출 등 사업성과 중심의 정량(서면) 평가
2. 2차 평가 : 특화산업의 적절성, 규제특례 활용에 따른 파급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비계량 지표 중심의 정성(대면) 평가
3. 3차 평가 : 특화특구의 차별성, 브랜드 가치, 지역경제 기여 기대감 등에 대한 대국민 평가

②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1차 평가 시 관할 지자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 및 증빙자료의 사실 여부 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특화특구의 운영성과 등급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의 5단계로 구분한다. 이 경우 평가순위가 영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평가순위 기준 이내인 특화특구의 평가등급은 ‘부진’으로 한다. 다만,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평가순위 기준은 대통령령 제36479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우수 특화특구에 대한 우대 조치 등) ① 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 결과 등급이 ‘탁월’ 또는 ‘우수’에 해당하는 특화특구의 성과 창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성과평가에서 ‘탁월’ 등급을 1회 이상 받고 해당 기간 동안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지 않은 특화특구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시 그 연장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화특구 내 특화사업자 및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부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 선정 또는 평가 가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관련 사업
2. 지역상권 육성 관련 사업
3.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관련 사업

4.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관련 사업
5.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관련 사업
6.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관련 사업
7.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관련 사업
8. 소공인 스마트제조 관련 사업
9.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16조(평가 전문기관의 인적·물적 기준 등) ①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적·물적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특화특구운영의 평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는 것
2. 제1호의 전담조직이 지역발전사업 등에 관한 지원업무 또는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분장 및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
3. 제1호의 전담조직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둘 것
 -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의 지원·평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지역발전사업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운영의 평가를 의뢰한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포상금의 지급)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년도 운영성과가 우수한 관할 지자체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운영성과가 전년도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특화특구 지정·운영 등 업무의 위탁) 장관은 영 제87조의 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무) ① 법 제11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 및 법 제16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또는 특화특구계획의 변경에 관한 심의·의결이나 법 제24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평가에 참여하는 특화특구위원회 위원,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 전문기관의 임직원, 제1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임직원, 중소기업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은 특화특구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특화특구 운영·관리 관련 업무 참여 제한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 [] 지정 [] 변경 [] 해제] 신청서			
신청자	① 지방자치단체명		② 공동신청여부 [] 단독 [] 공동
	③ 특화특구계획안 주요내용 공 고 기간		④ 특화특구계 획 안 열람 기 간
	⑤ 공청회 개최일		⑥ 특화사업자 지정일
	⑦ 지방의회 의견청취일		⑧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일
특화특구 계획	⑨ 특화특구 명칭		
	⑩ 특화특구 위치		
	⑪ 특화특구 면적		
	⑫ 대외적 표시방법		
	⑬ 특화사업		
	⑭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⑮ 특화사업자		성명 : 주소 :
	⑯ 규제 특례를 적용·해제받고자 하는 조문	일반적인 규제특례 토지이용 규제특례 권한이양 특 령	
⑰ 특화특구지정 해제 및 승인된 특화특구계획의 변경사항			
⑱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협의 완료일 : 년 월 일)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협의 완료일 : 년 월 일) [] 비대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및 같은 법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특구계획 변경·특구지정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특화특구계획 2. 법 제13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3. 법 제1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64조제1항·제3항, 제65조제2항 및 영 제37조·제3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작성 요령 >

① 지방자치단체명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역 지방자치단체(시·도)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명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명을 모두 기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명만 기재

② 공동신청여부

단독신청 또는 공동신청 중 해당하는 란에 표시

③ 특화특구계획안 주요내용 공고기간 (예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특화특구계획안의 주요내용 공고일부터 공고기간의 마지막날 기재

④ 특화특구계획안 열람기간 (예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특화특구계획안 최초 열람일부터 열람기간의 마지막날 기재

⑤ 공청회 개최일 (예시 : 년 월 일)

특화특구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일을 기재

⑥ 특화사업자 지정일

신청자 자신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복수의 특화사업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지정한 일자 기재

⑦ 지방의회 의견청취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의결일을 기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의 공문 발송일을 기재

⑧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일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기재

⑨ 특화특구 명칭

신청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특구’ 라는 명칭만 사용하면 되지 ‘지역 특구’ 라는 명칭까지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관광특구’, ‘연구개발 특구’ 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

⑩ 특화특구 위치

특화특구에 해당하는 지역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특화특구 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 예 시 >

- ○○○도 ○○시 ○○동 ○○번지 일원
- ○○○도 ○○군 ○○면 ○○리 · ○○리 · ○○리 일원
- ○○○도 ○○군 ○○면 ○○리 · ○○리 ○○번지 외 필지

⑪ 특화특구 면적

특화특구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떨어져 있는 특화특구의 총 면적을 m² 단위로 기재

⑫ 대외적 표시방법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좋은 명칭을 선택하여 기재하되 명칭사용 기준은 ⑨ 특화특구의 명칭사용 기준과 동일하며 ⑨의 명칭과 동일하여도 됨

⑬ 특화사업

특화사업의 명칭을 기재하되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만 3개 이내로 기재하고 세부적인 것은 특화특구계획에 기재. 다만, 특화사업은 불법이거나 위법이어서는 아니됨

⑭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을 기재하되 사업의 종료시점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세부 특화사업별 시행기간은 별도로 기재

⑮ 특화사업자 (예시 : ○○군 외 3개 사업자)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자 하나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외 ○○개 사업자”로 기재. 주소는 대표사업자의 주소만 기재

⑯ 규제특례를 적용·해제 받고자 하는 조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장제2절(제28조부터 제71조까지)에 규정된 규제특례는 적용 신청을 하여야만 받을 수 있음. 따라서 규제특례를 적용(또는 해제) 받고자 하는 조문(조문의 일부항만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항까지 기재)을 모두 기재

⑰ 특화특구지정 해제 및 승인된 특화특구계획의 변경사항

특화특구로 지정받은 후에 지정해제 신청 또는 특화특구계획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

※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총 특화사업비 100분의 30 미만의 투자자원 변경
2. 특화특구 지정 시 부여된 규제특례 중 활용되지 아니한 규제특례의 적용 해제(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는 제외한다)
3. 특화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특화특구에 대한 사업 시행기간의 연장
(특화사업비의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인가·허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된 사항

⑱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

특구 지정신청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또는 비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란에 표시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같은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별표 4에 따라 판단하며, 대상인 경우 협의 완료일을 함께 기재

< 제출 방식 >

특화특구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함

특구계획 사전 검토의견서

1. 개 요

구 분	내 용
검토 대상	(지방자치단체명) / (특구명)
검토 일자	년 월 일
작 성 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과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참여 전문가	1. 소속/성명 : (분야 :) 2. 소속/성명 : (분야 :)

2. 실현 가능성 중점 점검

① [지역 적합성] 지역 특화자원과의 연계성

※ 사업 추진의 지역적 당위성 및 기존 산업 인프라와의 연계성 여부

점검 항목 (Check Point)	판 정	비고 (확인사항)
1. 지역 연고성 - 지역 내 특화자원(특산물, 자연환경, 전통산업 등)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인가? - 단순 구상 단계가 아닌, 사업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기반 시설 및 기업군을 보유하고 있는가?	☐ 적정 ☐ 미흡	

② [재원 확보] 재원조달의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 계획된 예산(특히 민자)의 실질적 조달 가능성 및 투자 계획의 구체성 여부

점검 항목 (Check Point)	판 정	비고 (확인사항)
2. 지방비 확보 가능성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매칭 예산 확보가 가능한가? - 의회 사전 보고 등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했는가?	☐ 걱정 ☐ 미흡	
3. 민간 투자 확실성 - 민간 사업자(앵커기업 등)의 참여 의향이 확실한가? - 투자 시기·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투자의향서(LOI) 또는 투자확약서가 있는가?	☐ 걱정 ☐ 미흡 ☐ 해당 없음	

③ [추진 체계 및 파급효과] 안정적 운영 기반 및 지역 활력 제고

※ 사업 전담주체의 명확성, 일자리·인구 유입 등 실질적인 지역 경제 기여도

점검 항목 (Check Point)	판 정	비고 (확인사항)
4. 전담 조직 및 운영 주체 - 지방자치단체 내 전담팀 또는 사업을 수행할 민간 위탁기관(공사, 공단 등)이 확정되어 있는가? - 잦은 인사이동에도 사업을 지속할 거버넌스(협의회 등)가 있는가?	☐ 걱정 ☐ 미흡	
5. 성과 창출 가능성(지역활력) - 단순 특구 지정을 넘어,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가? - 생활인구(방문객) 유입 확대나 청년 정착 지원 등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구체적 유인책이 있는가?	☐ 걱정 ☐ 미흡	

3.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종합 검토의견

구 분	내 용
종합 검토의견	☐ 걱정 : 특구계획의 주요 사항이 대체로 적정함 ☐ 보완 권고 : 일부 사항에 대한 보완 검토가 필요함 ☐ 추가 검토 필요 : 주요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 또는 기획 보완이 필요함
보완 필요사항 (컨설팅 의견)	
안내 사항	본 검토의견은 사전협의 결과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참고하여 특화특구계획의 보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지역특화발전특구 구조고도화계획

(지자체명) ○ ○ 시 · 군 · 구

1. 특구 일반 현황

☐ 특구 개요

- 특 구 명 : ○○특구
- 지정일자 : 0000. 00. 00. (최초지정)
- 위 치 : ○○시·도 ○○시·군·구 ○○동 일원 (면적: 000,000m²)
- 총사업비 : 000억 원 (국비 00, 지방비 00, 민자 00)
- 주요사업 : (기존 특화사업 내용 2~3줄 요약)

☐ 구조고도화 추진 배경

- 추진 사유 : (성과평가 결과 등급, 지방중기청 현장 점검 결과 등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 행정적 배경 기술)
- 목 적 : (구조고도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및 정상화 방향 제시)

2. 운영성과 및 개선 필요사항 진단

※ 외부 환경, 내부 역량 및 사업모델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술

☐ 대내외 환경 분석

- 시장 환경 : (해당 산업의 성장성, 경쟁 상황 등 시장 트렌드 분석)
- 지역 여건 : (인구 구조, 기반 시설, 배후 수요 등 지역적 한계점 기술)

□ 내부 역량 및 사업 구조적 문제점(핵심)

- 민간투자 실적 및 한계 : (민간자본 유치 실적과 계획 대비 미달 사유)
- 사업모델의 적정성 및 개선 필요사항 : (수익 창출 구조의 한계 및 가치 사슬 단절 여부 진단)
- 규제특례 활용현황 및 미활용 사유 : (특구 지정 목적과 규제특례 간의 연계성 부족 및 장기 미활용 사유)
- 추진체계 및 협업체계 운영현황 : (지자체 전담 조직의 전문성, 협의회 운영 실태 등 추진 체계 문제점)

3. 구조고도화 추진 전략

※ 사업 재편과 신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시

□ 기본 방향

- 구조조정 : (성과가 없거나 실현 불가능한 특화사업 및 특례의 정리 방향)
- 민간 주도 전환 : (관 주도 방식을 탈피하여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한 방침)
- 사업모델 개편 : (기존 사업 모델을 고부가가치형으로 개편하는 방향)

□ 세부 추진 계획

① 성과 미흡 사업 및 규제특례 정비

- 사업 축소 : (폐지 또는 축소할 세부 사업명과 예산 절감 내역)
- 규제특례 정비 : (활용 실익이 없어 특화특구계획 변경을 통해 적용을 해제할 규제특례 조항)

② 민간 앵커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 유치 전략 : (유치 대상 기업 선정 및 유치 활동 계획)
- 투자 계획 : (유치 기업의 구체적인 투자 규모, 시기, 대상 사업)

③ 규제특례 재설계 및 활용 제고

- 신규 발굴 : (새로운 사업모델의 추진에 필요한 신규 규제특례 발굴 내역)
- 활용 계획 : (조례 제정 등 특례 적용을 위한 행정 절차 이행 계획)

4. 연차별 이행 로드맵

구분	00 년 하반기 (기반 재정비)	00 년 (사업 본격화)	00 년 (성과 창출)
제도	• (계획 변경, 조례 제정 등) •	• •	• •
사업	• (구조조정, 협약 체결 등) •	• •	• •

5. 기대효과 및 이행계획 확인

☐ 기대 효과

- (구조고도화 추진에 따른 정량적 및 정성적 기대 효과 기술)

☐ 지자체장 이행계획 확인

본 구조고도화계획의 연차별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특구 운영상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 작성 및 활용 유의사항

1. 증빙 자료의 확보

- 체크리스트 작성 시 '미활용', '위반', '미이행', '지연·중단', '지연·철회', '발생' 등에 체크한 경우, 단순 정황이 아닌 객관적 입증 자료를 반드시 본 서식 뒷면에 첨부하여야 함
* (필수 증빙 예시) 현장 사진(일자 포함), 관계자 확인서(문답서), 미집행 내역서,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

2. 단계별 판정 및 조치 기준

- [점검 필요] 단계 : 지자체의 추진 의지는 있으나 예산 확보 지연, 행정 절차 미숙 등으로 일시적 지연이 발생한 경우
→ (조치)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알리고 필요한 경우 컨설팅 및 개선방안을 안내
- [중점 관리] 단계 : 규제특례 미활용, 사업 중단, 자원 미확보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특화특구 지정목적 달성 가능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평가 결과가 '부진' 등급이거나 '미흡' 등급 연속 2회에 해당하는 경우
→ (조치) 본부와 협의하여 법 제16조제2항 해당 여부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구조 고도화 필요성을 검토

3. 보고 체계

- 본 체크리스트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리 내역 작성 시 활용
- 단, '중점 관리' 판정 시에는 정기 보고와 별도로 즉시 본부와 협의하여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함

1. 점검 개요

구 분	내 용
대상 특구	(지자체명) / (특구명)
점검 일자	년 월 일 (현장방문 / 서면검토)
점 검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입회자	(지자체) 소속/성명 : (특구 사업자) 성명 :
참여 전문가	1. 소속/성명 : (분야 :) 2. 소속/성명 : (분야 :)

2. 중점 점검 사항

※ 각 항목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해당란에 체크(✓)

점검 항목	확인 결과	비고 (특이사항)
① 규제특례 활용현황 규제특례가 실제 활용되고 있는지와 미활용 중인 경우 그 사유는 무엇인지 확인	☐ 활용 중 ☐ 미활용 ☐ 사업시점 미도래 ☐ 해당 없음	(미활용 특례명 기재)
② 특례 적용의 적절성 특례 적용 대상 사업자(자격요건) 및 구역 범위 등을 준수하고 있는가?	☐ 준수 ☐ 위반	
③ 필수 이행조건 준수 특례 적용에 따른 부대 조건(보험 가입, 안전 조치 등)을 이행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④ 사업 추진의 지속성 주요 특화사업(시설 운영 등)이 중단 없이 정상 가동 중인가? ※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정상적인 추진이 곤란한 경우 '지연·중단'에 체크	☐ 정상 가동 ☐ 지연·중단	(중단 사유)
⑤ 자원 조달 이행 당초 계획된 연차별 투자금액(지방비, 민간자본)이 집행되었는가?	☐ 이행 ☐ 미이행	(미집행액)
⑥ 핵심 민간 특화사업자 투자 이행 사업을 주도하는 민간 특화사업자(앵커 기업 등)가 협약된 투자(건설, R&D)를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단순 영업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투자 집행 및 사업 추진 여부 확인	☐ 정상 이행 ☐ 지연·철회	(지연 사유)

점검 항목	확인 결과	비고 (특이사항)
⑦ 법정조치 또는 구조고도화 검토 필요성 • 법 제 16 조제 2 항 각 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법 제 25 조에 따른 구조고도화 검토가 필요한가?	☐ 검토 필요 ☐ 해당 없음	
⑧ 심각한 부작용 • 특화사업 추진으로 환경 오염, 주민 갈등 등 부작용이 발생했는가?	☐ 발생 ☐ 미발생	

3. 종합 판정 및 조치 의견

판 정	조치 기준 (가이드라인)	해당
정 상	• 특례 활용 및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음	☐
점검 필요	• 일부 지연이나 미흡 사항이 있으나, 단기간 내 회복 가능함 ⇒ [조치] 조사결과 통지 및 필요한 컨설팅·개선사항 안내	☐
중점 관리	• 규제특례 미활용, 사업 중단, 자원 미확보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특구 지정목적 달성 가능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평가 결과가 ‘부진’ 등급이거나 ‘미흡’ 등급을 연속하여 2 회 받은 경우 ⇒ [조치] 본부와 협의하여 법 제 16 조제 2 항에 따른 조치요건 또는 법 제 25 조에 따른 구조고도화 필요성을 검토	☐

--

점 검 자 (서명)
확인자(담당 부서장) (서명)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리 내역(현장점검)

지방청명		00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할 지역	00시 · 도	
관할 지역 내 지역특화발전특구		00특구(00시) / 00특구(00군)				
현 장 점 검	참석자	(중기부) (지자체) (그 외)	대상 특구		00특구(00시)	
	일 시	00월 00일	장 소		00시 · 군 · 구청	
	점 검 결 과	취지 및 계획				
		운영의 적절성 · 효과성				
		법령 위반 및 부작용				
		지자체 운영 의지 · 노력				
기타 특이사항						
		제출일 : 0000 년 00 월 00 일				
(직위 및 직급)		(성명)		(서명)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리 내역(간담회)

지방청명		00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할 지역		00시 · 도	
관할 지역 내 지역특화발전특구		00특구(00시) / 00특구(00군)					
간 담 회	참석자	소 속	직 위		성 명		특구 명칭
	일 시	0월 0일		장 소		00청 회의실	
	주요내용						
수 렴 의 견	신규 규제특례						
	그 외 정책수요						
기타 특이사항							
제출일 : 0000 년 00 월 00 일							
(직위 및 직급)		(성명)		(서명)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검증 및 검토의견서

1. 검토 개요

구 분	내 용
대상 특구	(지자체명) / (특구명)
검토 기간	. . . ~ . . .
검토 방법	☐ 서면 교차 검증 (필수) ☐ 현장 실사 (필요시)
검 토 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과 (직위) (성명) (인)

2. 서면 데이터 교차 검증 결과

※ 성과보고서(텍스트), 총괄표(숫자), 증빙자료(문서) 간의 일치 여부 및 정합성 점검

점검 항목	지자체 제출 실적	검증 결과 (지방중기청)	불일치·조정 사유
재원 조달 (투자액)	(총괄표 상 총액 기재)	☐ 일치(인정) ☐ 불일치 (억원)	(증빙이 누락되었거나, 투자계획 단계로 실제 집행되지 않은 금액 등 미인정 사유 기재)
기업 유치 (기업 수)	(총괄표 상 총수 기재)	☐ 일치(인정) ☐ 불일치 (개 사)	(해당 연도 성과평가 기준상 기업유치 실적 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 기재)
고 용 (인원 수)	(총괄표 상 인원 기재)	☐ 일치(인정) ☐ 불일치(명)	(해당 연도 성과평가 기준상 인정요건을 충 족하지 못한 인원 등 조정 사유 기재)
매 출 (매출액)	(총괄표 상 금액 기재)	☐ 일치(인정) ☐ 불일치 (억 원)	(특구 사업과 무관한 매출이 포함되었거나,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금액 기재)
규제 특례 (활용 건수)	(총괄표 상 건수 기재)	☐ 일치(인정) ☐ 불일치 (건)	(단순 신고 사항을 특례 활용으로 오인했거나, 특구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활용 건수 제외)

3. 현장 실사 결과(해당 시)

※ 서면자료만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 분	내 용
방문 일자	. . .
방문 장소	(방문 기업명 또는 시설명)
실사 목적	(서면 검증 시 의문점, 실적 급증/급감 원인 파악, 주요 시설 가동 여부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유 기재)
확인 내용	(현장에서 담당자 면담, 시설 확인, 장부 대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 및 최종 판단 내용 기술)

4. 지방중기청 종합 검토 의견

※ 정량적 수치 외에 지자체의 노력도, 사업의 난이도,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한 정성적 의견

구 분	검 토 의 건
실적의 신뢰성	제출된 증빙자료와 총괄표 수치 간의 정합성 여부 및 오류 수정(보정) 필요 사항에 대한 의견 기술 (예: 단순 집계 오류 또는 과다 계상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포함)
사업 성과 및 노력도	전년 대비 실적 증감의 원인(외부 요인, 내부 노력 등) 분석 및 지자체 담당자의 사업 추진 의지, 민간 투자 유치 노력 등에 대한 정성적 평가 기술
종합 제언	위 검증 내용을 종합하여 해당 특구의 운영 성과에 대한 총평 및 향후 본부 평가위원회 평가 시 고려해야 할 특이 사항 제언

위와 같이 지역특화특구 운영성과에 대한 검증 결과 및 검토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인)

